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

일괄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747호

나. 발 의 자 : 김원중 의원(찬성자 23명)

다. 발의일자 : 2024년 04월 03일

라. 회부일자 : 2024년 04월 08일

2. 제안이유

- 문화재보호법상의 ‘문화재’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왔고,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,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‘24년 5월 17일’ 시행 예정입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상위법 제·개정에 맞추어 ‘국가유산’ 등의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조례 중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의 용어로 변경함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문화재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「문화재 보호법」이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고,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반영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각종 조례의 조문 중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것임.

나. 문화재 용어 및 분류체계 변경

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‘문화재(財)’는 유물에 ‘자산’의 개념을 강조한 측면이 있어 자연물(천연기념물 등)과 사람(무형문화재)을 지칭하기에 부적합하고, 특히 현행 문화재의 명칭과 분류체계는 제정 당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것으로 국제기준¹⁾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²⁾
-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‘유산’의 개념을 적용하여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을 제정하였으며(제정

1) 유네스코 ‘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’에서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, 자연유산,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, 별도의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음

2)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의문

2023.5.16., 시행 2024.5.17.),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여 문화재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였음.

<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 변화 >

문화재(문화재보호법)	국가유산(국가유산기본법)	비고
유형문화재	문화유산 ◦ 유형문화유산, ◦ 기념물(사적지류) ◦ 민속문화유산	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개정)
기념물(사적지류)		
민속문화재		
기념물(명승류, 천연기념물류)	자연유산	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(제정)
무형문화재	무형유산	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(개정)

-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맞추어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³⁾하였으며, 「문화재보호법」과 「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과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각각 개정⁴⁾하였음.

다. 조례안 일괄개정 사항

-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총 23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[참고자료 1].

3) 제정 2023.3.21. / 시행 2024.5.17.

4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: 개정 2023.3.21., 시행 2024.5.17.
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: 개정 2023.8.8., 시행 2024.5.17.

- 이는 법령 상호 간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용어 불일치로 인한 시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며,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표현이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음.
- 참고로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 문화재 기본 조례라 할 수 있는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개정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바, 이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이 지난 2024년 4월 3일 발의되어 동 조례안과 별도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송선옥	02-2180-8064

[참고자료1]

< 정비대상 조례와 조문 >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2조	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	제36조제3항제2호가 목	유형 문화재관련 → 유형문화유산 관련
제3조	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	제10조제2항	문화재 → 국가유산
제4조	서울특별시 결연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	제1조	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
		제2조제1호	「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
		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→ 서울특별시무형유산
제5조	서울특별시 경관 조례	제7조제8호	문화재보호구역 → 국가유산보호구역
제6조	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	별표 1의 제2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제7조	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	제명	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→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
		제2조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
			문화재 → 문화유산
		제3조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
		제4조제1항과 제2항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
		제5조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
		제6조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
			지정문화재로 → 지정문화유산으로
		제7조제1항, 제7조제2항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
		제8조	국외소재문화재 → 국외소재문화유산 문화재청 → 국가유산청
국외소재문화재재단 →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			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8조	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	제8조제2항제5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14조제3항제3호	문화재 보호구역 → 국가유산보호구역
		제52조제1항제2호다 목	문화유산 → 국가유산
		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별표 2의 제2호가목2)	문화재보호구역 → 국가유산보호구역
		별표 2의 제2호가목6)	문화재 → 문화유산
		별표 2의 제3호가목2) 와 5)	문화재 → 문화유산
별표 2의 제3호나목	문화재 → 문화유산		
제9조	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	제8조의2제1호	문화재 → 문화유산
		제47조제1항	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			문화재를 → 문화유산을
			문화재의 → 국가유산의
			문화재청장 → 국가유산청장
제54조제11항제2호	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→ 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,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자연유산		
별표 4의 제4호러목	문화재 → 국가유산		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명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→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
		제1조	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형문화재 →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무형유산
		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	“무형문화재”란 → “무형유산”이란
		제2조제2호부터 4호	무형문화재를 지역적 → 무형유산을 지역적
			무형문화재를 실현·향유함 → 무형유산을 실현·향유함
		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4조제1항 및 제2항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5조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2장의 제목	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→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
		제6조제1항	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문화재청장 → 「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국가유산청장
		제6조제2항제4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6조제4항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7조의 제목	(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) → (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)
		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	무형문화재의 → 무형유산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 → 서울특별시무형유산위원회
		제7조제1항제1호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(이하 “시무형문화재”라 한다) → 서울특별시무형유산(이하 “시무형유산”이라 한다)
		제7조제1항제3호	서울특별시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(이하 “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”라 한다) → 서울특별시시간급보호무형유산(이하 “시간급보호무형유산”이라 한다)
		제7조제1항제4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7조제5항제1호	고등교육법」 따른 →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
		제7조제5항제2호	무형문화재와 →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7조제5항제3호	무형문화재 관련 → 무형문화재 관련 무형문화재에 → 무형유산에
		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13조제3항제1호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→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
		제13조제3항제2호	무형문화재와 →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와 → 무형유산과
		제3장의 제목	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 → 시무형유산의 지정 및 보유자의 인정 등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17조의 제목	(시무형문화재의 지정) → (시무형유산의 지정)
		제17조제1항	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
			무형문화재 중 → 무형유산 중
		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17조제2항	시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→ 시무형유산의 지정 대상
			시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 →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
		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
		제17조제3항	무형문화재에 → 무형유산에
			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
		제17조제4항	무형문화재가 시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이 시무형유산
		제18조의 제목	(시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) → (시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)
		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	시무형문화재를 시급보호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을 시급보호무형유산
		제18조제1항제1호	시무형문화재가 → 시무형유산이
		제18조제1항제2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18조제1항제3호	시무형문화재로서의 → 시무형유산으로서의
			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 → 어려워진 시무형유산
		제18조제2항	시급보호무형문화재 → 시급보호무형유산
		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18조제3항	무형문화재의 보전 → 무형유산의 보전
		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18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	시급보호무형문화재 → 시급보호무형유산
		제18조제3항제4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19조제1항 본문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
			시무형문화재의 → 시무형유산의
		제19조제1항 단서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19조제2항제1호가 목부터 다목까지,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제19조제2항제1호다목	무형문화재가 → 무형유산이		
제19조제4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		
제20조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		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21조제1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22조의 제목	(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) → (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)
		제22조제1항	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을
		제22조제2항	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
		제25조의 제목	(시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해제) → (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)
		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	시무형문화재 또는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가 → 시무형유산 또는 시간급보호무형유산이
		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26조제1항제6호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
		제26조제1항제10호	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→ 국가무형유산 보유자
			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→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
		제27조의 제목	(무형문화재 대장) → (무형유산 대장)
		제27조제1항 전단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	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(이하 “무형문화재대장” → 시간급보호무형유산 대장(이하 “무형유산대장”
		제27조제1항 후단	시무형문화재 및 시간급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 및 시간급무형유산
		제27조제2항	무형문화재대장 → 무형유산대장
		제4장의 제목	시무형문화재의 보전 → 시무형유산의 보전
		제28조제1항	시무형문화재의 보전 → 시무형유산의 보전
			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→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
		제28조제3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28조제4항 전단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28조제5항 본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28조제8항제1호 및 제3호	시무형문화재 및 시간급보호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 및 시간급보호무형유산
		제29조제1항 및 제2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	무형문화재에 → 무형유산에
			무형문화재의 조사 → 무형유산의 조사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제30조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32조제1호 및 제2호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32조제3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	무형문화재 보존 → 무형유산 보존
		제33조제2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34조의 제목	(시무형문화재의 보호·육성) → (시무형유산의 보호·육성)
		제34조제1항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 시무형문화재의 보전 → 시무형유산의 보전
		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	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→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
			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→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
		제35조제1항	시무형문화재의 분야별 → 시무형유산의 분야별
		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35조제2항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36조제1항,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37조의 제목	(시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) → (시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)
		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
		제37조제2항 및 제3항	시무형문화재를 → 시무형유산을
		제37조제6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38조제2항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		제6장의 제목	무형문화재의 진흥 → 무형유산의 진흥
		제39조제1항 및 제3항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40조의 제목	(무형문화재의 교육지원 등) → (무형유산의 교육지원 등)
		제40조제1항	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 →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
			무형문화재 → 무형유산
		제41조제2항	시무형문화재가 → 시무형유산이
		제42조	시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
별표 1의 제목	시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 → 시무형유산 지정 대상 및 기준(제17조제2항 관련)		
별표 1의 제1호	시무형문화재는 → 시무형유산은		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0조	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별표 1의 제2호	시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→ 시무형유산은 무형유산
		별표 2의 제목	시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(제36조 관련) → 시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연령(제36조 관련)
제11조	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	제2조제1호	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→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
제12조	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	제명	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→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
		제1조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
		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2조	“문화재지킴이” → “국가유산지킴이”
			문화재를 → 국가유산을
		제3조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
		제4조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
		제5조제1항과 제2항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
		제5조제3항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6조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
제7조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		
제8조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		
제9조	문화재 → 국가유산		
	문화재지킴이 → 국가유산지킴이		
제13조	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제12조제1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제14조	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	제1조	문화유산 → 국가유산
		제2조제1호 단서	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국가유산기본법」
			문화재는 → 국가유산은
제16조제2호	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문화재로 → 국가유산으로		
제15조	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	제3조제3항	지정문화재 → 지정유산
		제3조의2제3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4조의2제2호	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→ 국가유산 또는 국가유산적
		제6조제3항	문화재분야 → 국가유산분야
		제7조제3항	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→ 서울시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분야
제16조	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	제3조제1항제2호	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1항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
		제49조제1항제2호	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제1항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17조	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	제9조제2항제3호	「문화재보호법」 제35조 →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
		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	다만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재(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「문화재보호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→ 다만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(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8조	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	제5조제3호	문화재보호구역 → 국가유산보호구역
제19조	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	제3조제3호	문화재청장 → 국가유산청장
		제5조 단서	「문화재보호법」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		제10조제2항	「문화재보호법」 제62조 →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2조
		제11조제2항제3호	건축·도시계획·관광·환경·문화재 → 건축·도시계획·관광·환경·국가유산
제20조	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	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	「문화재보호법」에 →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문화재(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)가 → 자연유산(보호구역을 포함한다) 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(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이
			「문화재보호법」이 →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
제21조	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5조제2항	역사·전통문화·전통사찰·문화재 → 역사·전통문화·전통사찰·국가유산
			불교문화재 → 불교국가유산

조문	정비대상 조례	정비조문	정비내용
제22조	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	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	문화재청·서울특별시교육청·수도방위사령부 → 국가유산청·서울특별시교육청·수도방위사령부
		제4조제3항제4호	문화재 → 국가유산
		제7조제2항	② 유산구역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에 따른 문화재구역과 제2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한다. → ② 유산구역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.
		제7조제3항	③ 완충구역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. → ③ 완충구역은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.
제23조	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	제5조의2제2항	문화재위원 → 국가유산위원
제24조	서울특별시 성균관·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11조제1항	문화재 → 국가유산